

일 상 감 사 요 청 서

건 명	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내규, 재산관리규정, 시설물운영관리규정
1. 사업개요	
○ 사업근거	
- 임대 활성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(재무팀-1191, '16.3.11)	
-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	
○ 사업내용	
- 임대료 결정방식에서 공인감정기관의 적정 임대료 평가가격으로 임대료 결정	
-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	
○ 사업기간 : 해당 없음.	
○ 사업비 : 해당 없음.	
2. 자체 검토의견	
가. 사업의 추진배경	
○ 가락몰 등 임대 활성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	
○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	
나. 사업의 필요성	
○ 적정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	
○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	
다. 사업의 적정성(관련규정 검토)	
○ 관련부서 협의 및 사규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	
라. 기대되는 효과	

붙임 규정 개정(안)